

**【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개정 신·구조문 대비표 】**

현 행	개 정	비 고
<p><b>제3조(계좌설정)</b> ① 가입자가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별첨에서 정하는 최소계좌설정금액 이상의 금액을 예치한 경우 회사가 연금저축통장, 연금저축증서 또는 연금저축카드 등을 교부함으로써 계좌가 설정된다.</p> <p align="center"><b>&lt;신 설&gt;</b>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<b>제3조(계좌설정)</b> ① 가입자가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별첨에서 정하는 최소계좌설정금액 이상의 금액을 예치함으로써 계좌가 설정된다.</p> <p>② 회사는 계좌를 설정한 가입자에게 연금저축통장, 연금저축증서 또는 연금저축카드 등을 교부한다. 다만, 무통장 거래 등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	<p>계좌설정시 저축통장 등 교부의무 삭제 및 거래방식 명확화</p> <p>호 이동</p>
	<p><b>부칙</b></p> <p>이 약관은 2017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부칙 추가</p>